

대전지방법원 2022. 4. 13 선고 2021가단126464 판결 [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3. 23.

판 결 선 고 2022. 4. 1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2. 6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0. 2. 7. 접수 제9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준호

별지